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1

제 출 일 : 2024. 1. 16.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대규모 창고시설, 화장시설 등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0조의2,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112조, 별표 1의2, 별표 5, 별표 9,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1, 별표22

3. 주요내용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 [별표 4, 별표 15, 16, 18, 19, 21, 22]
- 주민 갈등 및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포함)에 대하여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 제한

-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경관 훼손 등의 피해방 지를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창고시설 부분 제한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의 일반창고, 냉장 및 냉동 창고만 허용)
-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입지 제한을 위한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수립 [안 제22조, 별표 1의3]
- 대규모 창고시설의 규모, 이격거리, 높이기준, 기반시설기준, 소방 계획 등 입지 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규정 [안 제16조의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목적'및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명확화 [안 제18조의2]
-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 명확화
-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 대상 정비 [안 제53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오기사항 정정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일반숙박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기준 명확화 [별표 9]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9]에 명시된 일반숙박시 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준 반영
- 농림지역에서의 타법에 의한 건축제한 표기 [별표 20]
-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건축물 제한을 받는 규정 명기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5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42조의3제2항제13조 및 14조 삭제(21.7.6.)에 따라 이에 근거한 조례 제15조제2항 삭제
- 조례 제2020호 부칙 경과조치 조항 삭제 [부 칙 <조례 제2020호 2022.12.29.> 제3조]

4. 참고사항

- 가.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3. 10. 20. ~ 2023. 10. 30.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예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아동과):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가결
- 나.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06.
 - 2) 예고결과 : 제출의견 2건
- 다. 규제심사 결과
 - 1) 심의일자 : 2024. 01. 15.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 5. 개정조례안 : 별첨
- 6.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등 : 덧붙임
 - 가. 입법예고 : 결과보고 결재공문
 - 나. 예산협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다. 성별영향평가 : 결과회신 공문

라. 부패영향평가 : 결과회신 공문

마. 규제심사 : 심의결과 공문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기준) 영 제50조의2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 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 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2조(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 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 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제53조제3항제4호 중 "기술자로서"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로 한다.
-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의(3)을 삭제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 4 제16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 별표 9 제2호(1)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을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 별표 15 제14호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 라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 별표 16 제21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에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 라목은 제 외한다)"로 한다.
- 별표 18 제15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에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 라목은 제 외한다)"로 한다.
- 별표 19 제2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에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 라목은 제 외한다)"로 한다.
- 별표 21 제16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 라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비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 별표 22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에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 라목은 제 외한다)"로 한다.
- 조례 제2020호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창고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되거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적용받는 계획,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창고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되거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조항)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건폐율·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축·재축·대수선을 할 수 있다.

소관 관・과		도시정책과	
	관·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 상 민	
입안자	팀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윤 광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선 영 (031-590-2357)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의2】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22조 관련)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폭 8미터 이상의 현황도로(「도로법」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왕복2차로 이상의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가목에 따른 아파트 제외)의 경우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학교, 병원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비고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페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페기물처리업(페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관련 시설, 제46조에 따른 페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제46조제1항제3호는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대상시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관련 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의3】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22조 관련)

- 1.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국도·지방도·시도 및 왕복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에서 신청지까지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 폭 8.0m 이상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거나, 법 정도로에서 신청지로 직접 진·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양방향에서 진·출 입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형식을 갖추고,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접속기준에 대하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2)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소음, 분진 등 차폐를 위하여 주택지, 학교가 있는 필지의 경계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필지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30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지가 사용중인 국도, 지방도, 시도 및 왕복2차로 도로로 분리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3) 건축물의 높이(지하층 및 박공지붕 포함)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공업지역, 관리지역: 40미터 이하
 - 2) 그 밖의 용도지역: 30미터 이하
 - (4) 창고시설 내 화재 시 원활한 진화를 위하여 소방차 교행이 가능한 순환형 내부 소방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방도로 하부에는 지하층을 계획할 수 없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창고시설 전체 부지면적 4,500m² 미만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000m² 미만인 경우
 - (2)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 (3)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창고시설인 경우
 -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허용된 창고시설인 경우

-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입지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경관·환경·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
 -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식물관련시설) 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별표 제22호(자원순환시설)에 따른 시설을 철거하고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 (3) 창고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비고

- 1. 제1호(2)의 주택지란 주택(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10호 이상의 밀집지역 (대지경계 간 최단 직선거리 50m이내)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 2. 제1호 (2)의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상 같은 생활권 내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시설등의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은 같은 생활권 내공공시설등 확보에 사용하여야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기준)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 란 3년을 말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기준)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 란 3년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 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 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 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

-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자문에의 조언) ① 삭 제
 - ② (생략)
 -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 목)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 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 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 한다)을 말한다.

<신 설>

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 이 연장할 수 있다.

자문에의 조언)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 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 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 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는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 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 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 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 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 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 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 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 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 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 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 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형 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 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10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u><신</u> 설>

제5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1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 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 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5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3)	

명과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 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 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1. ~ 3. (생략)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u>기술자로서</u>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 8. (생략)

④ ~ ⑨ (생 략)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 저략)

② •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술사 또는 「건</u>
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5. ~ 8.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세54조(위원장 등의 직무) <u>①</u>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 결과 보고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에고 결과 보고

- 1. 도시정책과-18567(2023.11.14.)호 관련입니다.
- 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에고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입법예고 결과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6. ~ 2023. 12. 6.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2건 (도시개발과 외 1건) ※ 내용 별첨 ※ 제출된 의견 중 도시개발과에서 개정 요청한 사항은 도시개발과로 통보하여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2024. 1. : 규제심사
- 2024. 1. : 조례규칙심의회
-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 2. 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1부.
 - 3.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 4.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결과 1부, 끝,

전경 2023, 12, 26, 도시계획팀장 순락호 도시정책과장 이상면 도시국참 주무관 최선영 협조자 도시개발과장 김준모 법무행정팀장 조성관 법무담당관 김진배 시행 도시정책과-21286 접수 무 12232 경기도 남망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망주시청제1청시)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357 팩스번호 031-590-2359 / sychoi28@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연 번	제출자	주요내용	반영여부	수정안
1	도 개 과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 른 규정적용 시 개발행위변경 허가에 대한 별 도의 검토 요청 - 검토(안) 변경하기 증설 기 증설 지의 지의 목적이 에너 경로 경우에 가로 보이 개정규정에 함.	【반 영】 ○ 조례 시행 이전 하가 등을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허 가부지의 증설 이나 관리 작용이 대해서는 조례의 작용을 받도록 취소 수정	부칙 제4조(개발행위허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종 전의 시행 당시 작가 되어 가 이 종 전의 가 이 하는 그 이 이 중 작용한다. 제5조(용도지역 한 기존에 하는 경우는 경우는 전용한다. 제5조(용도지역 한에 관한 기존에 다 이 종 전의 지한의 지하는 기계 이 종 전의 대한의 지하는 기계 이 종 전의 지하는 기계 이 등 기가 이 등 기계 이 등 기계 이 등 기가 이 등 기계 이 등 기가 이 등 기가 이 등 기가 이 등 기가 이 이 하는 기가 이 이 등 기가 이 이 등 기가 이 이 등 기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가, 신고 등을 신청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창고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 되거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기 존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 다. 【반 영】 부칙 ○ 용도지역 안에 ○ 기존 건축물의 **제6조 (기존의 건** 서의 건축제한 경우 [국토계획 | 축물에 관한 특례 에 관하여 기존 법」 제82조 및 조항) 이 조례의 의 건축물에 대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 한 특례 적용 제93조에 따른 하고 기존 건축물 '기존의 건축<mark>이 용도지역 안에</mark> 가능여부 검토 물에 대한 특 서의 건축제한에 요청 례 조항'을 부적합하게 된 경 적용하여 건폐 <u>우 건폐율·용</u>적률 율·용적률이 증 이 증가하지 않는 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 범위에서 '재 법 제2조제1항에 축' 또는 '대 따른 개축·재축·대 수선'이 가능 수선을 할 수 있 하나 다. ○ 환경개선 등 불 가피하게 기존 건축물의 개축

			이 필요한 경 우에 대한 적 용 규정이 없	
			으므로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	
			되지 않는 범위	
			<u>에서</u> '개축'	
			가능하도록 검	
			토	
			【미반영】	
		○ 창고업이 아닌	○ 금회 조례안은	
		자가목적의 창	개별 물류창고	
		고시설 규제	시설의 난개발	
		반대(개발규제	로 인한 부작용	
		지양 요청)	을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	
		○ 불가피하게 도	시행령』 제56	
	무네	시계획 조례	조에 따라 특정	
	롯데	개정 추진 시	건축물에 대한	
2	칠성	이전 입법예고	이격거리, 높이,	-
	음료((21.9.30.)와 같	배치 등의 구체	
	주)	이 자가목적의	적인 사항에 대	
		창고시설 예외	한 합리적인 입	
		기준 반드시	지기준을 마련	
		적용 요청	하고자 하는 사	
			항으로,	
		※ 이전 입법예고	○ 개발행위 허가	
		예외기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명확하게 하고	

에 관한 법
률」 제21조
의2 제1항에
따른 물류창
고업 등록 대
상이 아닌 경

물류창고업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
 류창고에 화
 물을 보관하
 거나 이와 관
 련된 하역·
 분류·포장·
 상표부착 등
 을 하는 사업

재산권피해 최 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조 례 일부개정 (안)」 별표 1 의3 제2호에 따라 물류창고 업 등록대상 규 모 미만(부지면 적 4,500㎡ 미 만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1,000 ㎡ 미만)인 경 우 적용 제외토 록 기 검토한 사항이므로 기 존(안)대로 반 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타시군(용인시) 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기준 에 대한 해석 에 혼란이 없 도록 입지규제 적용 제외 대 상을 당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 록 대상에서
등록대상 규모
미만으로 변경
(개 정 2022.05.17.)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창고 시설 및 화장시설 입지 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 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 후에도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국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붙임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3A경기남양091)

- 1. 도시정책과-17091(2023, 10, 20.)호와 관련입니다.
-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3A경기남양091) 1부. 끝.

남 양 주



전달 2023 10, 30, 여성정책당장 김윤명 여성아동과장 이전훈 주우강 복지국장 이연회 최재용 협조자 시행 이성아동과-29650 (2023, 10, 30,) 접수 도시정책과-17604 (2023, 10, 30.)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백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c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남양091			
정 책 명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정책과		
	담당자명	최선영	전화번호	031-590-235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정책과)	대한 입지 저	시설, 동물 화장시 한 검토		등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정(*23.7.18.) 사항 반영
	■ 개선사항	없음 🗆 자	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님,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도시정책과장 귀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3-77)

도시정책과-17094(2023.10.20.)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씨꽝근

2023. 10. 25. 청렴윤리팀장 신경주 추우관 감사관 김주현 서상근

현조자

시행 감사관-11914 (2023, 10, 25.) 접수 도시정책과-17311 (2023, 10, 2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 1. 남양주시 도시정책과-17093(2023, 10, 20,)호와 관련됩니다.
- 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 중 ①창고시설의 개발행위하가 기준, ②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창고시설 하가 기준, ③용도지역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하가 기준은 행정규제의 신설(①) 및 강화(②,③)에 해당하므로.
-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 및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의거하여 규제심사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대상 조문 : 불임 4 참고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하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 25.]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예비심사)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따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동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 3. 참고자료 1부.
 - 4. 규제 대상 조문 1부, 끝.



남 양 주 시



수신 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서면) 심의 결과 알림

- 1. 의회법무과-847(2024. 1, 15.)호와 관련됩니다.
- 2. 2024.1.15.(월)에 개최한 2024년 제1차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서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2024-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 붙임 1,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1부,
 - 2. 심의 요지 1부.
 - 3. 의결서 각 1부, 끝.

의희법무과장 **윤선기** 2024 1. 15. 규칙계획팀장 낚성명 주무관 조현기 협조자 (2024, 1, 15.) 접수 도시청책과-623 시행 의뢰업무과-888 (2024, 1, 1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혼로 1037 (공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